

# 3. 11 油價引下の 背景과 內訳

尹 秀 吉

(動力資源部·石油調整官)

## I. 油價調整의 背景

### 1. 세계 原油市場의 동향

原油需要는 先進國의 景氣沈滯 및 油類 소비절약 등으로 81年中 79年對比 9.8%가 減低되었으며 반면 原油供給面에서는 81년 11월 以後 사우디가 종전 하루 930萬 배럴에서 80萬배럴을 減産, 850萬 배럴을 生産하여 需給安定化 상태를 企圖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란-이라크戰을 겪는 동안 잃어버린 市場을 되찾기 위하여 82年 2月 1日字로 70萬배럴에서 320萬배럴로 增産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나이지리아, 리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이 財政維持를 위하여 增産하였으며, 國際高金利에 따른 金融費用 增加 및 原油價安定推勢를 감안, 國際石油會社가 保有在庫를 방출함으로써 世界原油市場은 하루 約 200萬배럴의 供給過剩상태를 示顯하게 되었다.

이러한 原油供給과잉상태를 반영하여 이란 및 英國은 82年 들어 두, 세 차례에 걸친 原油價 引下를 단행하였고, 輕質原油인 英國産 原油의 引下는 OPEC 原油價의 調整을 가져온 촉진제가 되었다.

또한 78年末 이란事態에 따른 第2次石油波動結果 多元化되었던 國際原油價는 81년 10월 29일 第61次 OPEC 特別會議結果 78年末의 單一化 상태로 復歸하고 81년 12월 9일의 第62次 OPEC 會議결과 一部 重質原油價가 引下됨으로써 78年末보다 더욱 單一化되어 原油價多元化에 따라 國內油價의 90% 以上을 차지하는 原油價를 平準化하여 精油社別 損益差異를 完化하고 産油國의 빈번한 原油價引上和 逆及引上에 따르는 국내油價調整 要因을 潛定的으로 緩衝하기 위하여 실시된 原油價平

準化制度는 전면 再檢討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란 및 英國의 原油價 引下現況〉

(單位: \$/B)

	82.1.1	2. 5	2. 8	2. 12	2. 21	3. 1
이 란 (I-L)	34.20	33.20		32.20	30.20	
英 國	36.50		35			31

이러한 世界原油市場동향에 따라 政府는 82年 3月 11日字로 原油價평準化制度를 폐지하고, 國內油價를 2.82% 引下調整하였던 것이다.

한편 油價調整 以後의 世界原油市場 동향을 살펴 보면, OPEC는 분열에 까지 이르지도 모르는 급박한 狀況을 感知하여 지난 3月 19日 오스트리아 빈에서 第63次 OPEC特別會議를 개최, 基準油價 34\$/B를 유지하고, OPEC 生産上限線을 하루 1,800萬배럴로 감축키로 결정함으로써 OPEC 基準原油인 사우디輕質油價格이 28\$/B까지 引下될 것이라는 展望을 뒤엎고 價格에 이어 生産카르텔마저 더욱 強化시키는 노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會議前의 實際産油量이 하루 1,800萬 배럴 水準으로 推算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減産效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계속적인 在庫放出과 계절적인 需要減退로 供給過剩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展望되고 일부 輕質原油價는 OPEC의 原油의 質의 差異에 따른 價格差異 完化推進으로 下落되고 있으므로 原油價는 實質적으로 下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判斷된다. 今番 會議결과 OPEC의 減産配定量은 다음〈表1〉과 같다.

(表 1) OPEC 감산배정량

(단위 : 천B/D)

국 별	1일생산량	할당량	증 감	比 率
사 우 디	850	700	-150	-17.6%
알 제 리	70	65	-5	-7.1
에콰도르	20	20	-	-
리비아	80	75	-5	-6.3
쿠웨이트	65	65	-	-
베네수엘라	195	150	-45	-23.1
이 란	110	120	+10	+9.1
이 라 크	130	120	-10	-7.7
나이지리아	175	130	-45	-28.1
인도네시아	149.2	130	-19.2	-12.9
가 봉	14	15	+1	+7.1
카 타 르	40.3	30	-10.3	-25.6
U A E	138.3	100	-38.3	-27.7
중립지대	30.5	30	-0.5	-1.6
計	2,067.3	1,750	-317.5	-15.4%

이를 各國의 經常收支均衡에 필요한 產油量과 對比하기 위하여는 다음 <表 2>를 参照할 수 있겠다.

2. 原油價평준화制度 폐지

原油價多元化에 따라 실시되어 國內油價 안정에 기여하여 왔던 原油價평준화制度의 廢止理由는 82年 3月號 “油價引下要因과 內訌”에 상세히 설명

된 바 있으므로 略하기로 한다. 다만 그 背景에 對하여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政府의 석유정책의 基本課題는 석유제품의 需給安定에 있고, 이러한 수급안정은 價格安定이라는 政策目標과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政府는 64年 이래 國內油價를 直接統制하여 왔고, 이에 따라 政府의 精油社 損益에 對한 直接關与는 불가피하였던 것이며, 民生安定과 산업정책 考慮下에 결정된 油種間 價格은 國際 價格構造와 절대가격 및 油種間價格의 相對比率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原油 및 石油製品에 對한 輸入統制가 불가피해져 政府의 價格統制는 需給統制로 직접 연결되어졌다. 結局 우리나라는 「消費地 精製主義」에 100% 의존하다시피 하여 基礎에너지源을 전적으로 精油社에 의존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精油社의 損益을 考慮한 價格政策으로 우리 경제의 量的 擴大 및 구조적 轉換과 國際石油市場의 변화에 能動的이고 積極적으로 對処하기에는 상당한 時間的 乖離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時間的 괴리는 불필요한 油價引上要因으로 작용하고, 原油導入 단계에서 최종 消費者의 소비단 계까지 많은 問題點을 도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緩和하기 위하여 政府의 價格統制는 단계적으로 完化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表 2) OPEC 各國의 減産能力 및 石油收入推移

(單位 : 10億\$)

国 別	外換保有高	經常收支均衡에 必要한產油量 (千배럴/日)	1979	1980	1981				
					I	II	III	IV	
								10	11
사 우 디	161.6	6,410	55.35	96.32	27.69	28.08	27.97	9.62	8.21
알 제 리	3.8	1,200	7.38	11.19	2.84	2.65	2.04	0.65	0.79
쿠웨이트	76.2	900	13.87	13.35	4.04	2.83	2.63	0.93	0.78
U. A. E.	38.6	810	12.86	19.45	5.12	4.82	4.60	1.66	1.44
카 타 르	16.1	60	3.58	5.39	1.65	1.42	1.09	0.41	0.36
베네수엘라	7.7	2,400	8.33	11.91	3.94	3.83	3.32	1.95	-
인도네시아	10.0	1,500	8.12	11.67	-	-	-	-	-
리비아	33.4	1,070	1.76	2.52	0.62	0.53	0.25	0.08	0.08
이 란	3.0	3,610	17.42	10.10	1.64	1.66	1.68	0.57	0.51
이 라 크	31.8	2,110	28.04	28.78	2.48	3.15	3.09	1.11	1.20
나이지리아	4.5	2,230	16.65	25.61	6.68	4.72	2.72	1.28	1.67
가 봉	0.7	160	1.15	-	-	-	-	-	-
에콰도르	0.7	220	1.05	1.29	0.31	0.35	0.24	0.24	-

資料 : Financial Times (1982. 2. 26)

原油比重이 가장 큰 原油費部門에 競争原理를 도입하는 基本原則下에 政府는 지난 3月 11日 以後 船積되는 原油分부터 原油價평준화制度를 廢止하였다.

勿論 이를 斷行할 수 있기 위하여는 지난해 10月 29日 제61차 OPEC 特別會議 이후의 原油價 單一化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前提가 있었던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와같이 原油價평준화 制度를 폐지하고, 安定基金의 用途를 原油導入先 다변화 推進을 위한 追加輸送費 등 支授所要分과 지난 2月末로 1,345億원에 달하는 安定基金 不足額을 83年 3月末까지 해소하는 財源으로 國庫剩餘에 따라 安定基金은 종래 배럴당 2.3\$에서 0.7\$로 그 徵收規模가 축소조정되었고, 이에 따른 油價引下 효과는 2.7%에 달해 그 間의 換率上昇에 의한 油價引上要因을 相殺하고도 油價를 引下할 수 있는 主要財源이 되었던 것이다. (表 3 參照)

또한 油價算出 內訳面에서 살펴보면, 종래에는 最低導入社의 原油價를 油價에 반영하고 平均導入價와 最低導入社의 原油價와의 차이를 安定基金 中 일부인 高價差額補填 所要財源으로 油價에 반영하던 제도에서 油價反映 原油價를 平均도입가로 轉換시킴으로써 지난 79年 7月 10日 原油價 平準化 실시 이전의 油價制度로 되돌아 가게 된 것이다. 참고로 平均導入價 算出내역을 살펴보면, 契約物量 기준의 産油國 公示價格(posted price) 加重平均値를 적용하되 産油國의 유전스期間 30日 超過分은 差減하고 종전에는 平均導入價 算出時 제외시켰던 低質原油도 포함시키고 있다.

## II. 油價調整 내역

### 1. 油價引下 要因

今番 油價引下 要因은 앞에서 설명한 原油價 引下 要因과 原油價평준화制度 廢止에 따른 引下 要因外에 81年 4月 19日 油價調整時 81年 1~3日의 缺損을 81年末까지 償却하기 爲하여 精製費에 반영되어 있던 419원/배럴과 同額을 82年 3月 10日 까지 油價에서 差減하지 않음에 따른 精油社의 差益을 82年末까지 상각하는 水準의 84원/배럴 및 82年度 LPG 輸入에 따른 精油社 利益 449億원(236원/배럴)을 精製費에서 差減하고 82年 1月 1日 輸入承認分부터 貿易特許資金이 CIF의 0.11%가 引下됨에 따라 원유도입 附帶費를 引下조정하여 總 6.22%에 달하였다. 그러나 換率이 690원/\$에서 714.30원/\$로 상승하여 油價引上 要因으로 2.8% 작용하였고, 原油價平準化制度 폐지에 따라 安定基金에 의한 換差損一部 補填所要가 앞의 <表3>에서 보는 것처럼 원유도입 金融費로 전환되어 0.6%의 引下 要因이 됨으로써 國內油價는 2.82%를 引下할 수 있게 된 것이다.

國內油價 算出時에는 석유제품輸出入에 따른 損益을 油價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石油製品의 輸出入은 國內需要 및 공급상황에 따라 不規則적으로 이루어지며, 國際市場價格은 수급상황에 따라 수시로 騰落하므로 이를 予測·反映하기는 거의 불가능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國內油價 算出의 경우, 석유제품輸出時에는 國內告示價格과 동일한 가격으로 販賣하고, 輸入時에는 國內석유제품生産原

(表 3) 安定基金徵收規模 縮小

區分	安定基金		基準原油價		計	
	從前	現行	從前	現行	從前	現行
	2.3	0.7	32.92	32.77	35.22	33.47
	換差損中一部 0.25 高價差額補填 0.46 인센티브 0.08 仲介手数料 0.08	0.59	最低價	平均價 <sup>1)</sup>		
	不足額充當 1.32	0.11	油價引下效果 △ 0.3%	油價引下效果 △ 3.0%		
	輸送費支授 0.11					

価와 동일한 價格으로 輸入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LPG의 경우에는 82年度 国内 需要予測量 63万톤의 44%인 28万톤이 輸入될 것으로 展望되고 輸入價格이 확실히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를 算出, 반영하여 国内油價를 0.7% 引下하는 財源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4)

(表 4) 今番 油價調整要因

구 분	81. 11. 29	82. 3. 11	유가조정요인
<b>I. 유기인하요인</b>			
(1) 기준원유가인하	32.92\$/B	32.77\$/B	△ 0.3%
(2) 원유도입부배비인하	1.25 "	1.16 "	△ 0.3%
(3) 안정기금징수액인하	2.3 "	0.7 "	△ 3.3%
(4) 정제비인하	2,366원/B	1,595원/B	△ 2.3%
소 계			△ 6.22%
<b>II. 유기인상요인</b>			
(1) 환율상승	690원/\$	714.3원/\$	△ 2.8%
(2) 기금에 의한 환차손 보전액의 원유도입 금융비 전환	0	182원/B	△ 0.6%
소 계			△ 3.4%
계	32,855원/B	31,930원/B	2.82%

## 2. 調整內訳

이러한 2.82% 引下財源中 우선 LPG輸入에 따른 利益予想分을 償却함에 따른 油價引下要因 0.7%로 LPG價格을 10.6% 引下하고, 残余 2.12%를 産業의 국제경쟁력 強化를 위하여 사용하되 石油化学工業이 輸出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實情을 감안, 石油化学工業의 基礎原料인 나프타價格을 11.6% 引下하여 나프타를 分解·생산하는 에틸렌價格이 경쟁상대국인 台灣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残余要因으로 B-C油를 平均 2.4% 引下調整하였다.

우리 나라는 産業用 油類消費比重이 높아 輕質油인 揮発油·燈油·輕油等の 需要가 低調하므로 他国과 동일한 原油費와 精製費가 소요될 경우 절대가격이 他国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油類消費者價格中 諸稅公課金等이 차지하는 費用이 20%에 달하여 이를 더욱 加重시키고 있다.

더구나 油種別價格 算出時에는 産業의 國際競争

力 강화측면과 民生安定的 側面이 적절히 配分 고려되어 결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産業의 基초燃料인 B-C油는 상대적으로 높고 輸送用이 大宗을 차지하는 輕油 및 난방용 油類인 燈油는 상대적으로 낮게 策定되어 있다. 이에 따라 B-C油는 國際價格과 상당히 乖離되어 實 수요자들이 直輸入을 요청하고 있으나, 實 油種만 直輸入하고 國際價格이 国内價格보다 廉宜 油種은 直輸入하지 않게 될 경우 精油社의 存立은 어렵게 되고 国内 石油製品 需給은 全的으로 輸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国内 석유제품 需給安定的 基礎이 무너지게 됨과 동시에 絶望을 수 없는 破局으로 치닫게 될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安定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産業의 基초원료 및 燃料은 국제가격수준으로 引下調整되어야 한다. 비단 2.4% 引下에 그쳤지만 今番의 나프타 및 B-C油 價格의 引下는 그런 觀點에서 상당한 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III. 3. 11 油價調整과 關聯한 小考

國際油價의 앞날에 對한 專門家들의 의견은 百人百色이다. 第3次 石油波動이 닥칠 것이라는 見解를 皮력하는 이들의 論點을 살펴보면 中東地域의 政情不安 이외에도 대략 다음과 같은 要因으로 大別된다.

첫째, 石油需要의 減退는 현재의 世界景氣 不況 때문이며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從前의 수준 또는 그 以上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며,

둘째, 高油價는 長期的인 石油需要, 特히 世界原油消費의 2/3를 차지하는 난방·용연료의 需要를 蚕食시킨다고 하나, 原油의 主要 代替源은 人工燃料이며, 현재 石炭의 역회等 人工燃料의 開發은 積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또한 OECD의 石油需要는 減少한다 하더라도 低開發國의 石油需要는 계속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80年代 후반에는 소련을 비롯한 東歐圈이 石油輸入國으로 反轉될 것이란 點이다.

넷째, 石炭價格이 石油價格 수준만큼 오르리라는 點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對한 反박은 또한 다음과 같다. 즉 첫째, 日本은 최근 GNP는 성장하면서도 石油消

## □ 政策論壇 □

費는 減少되고 있으며,

둘째 : 原油의 主要代替源으로 보다 싼 石油代替物이 많이 등장, 實用化되어 있고,

셋째 : 低開發國의 石油需要가 늘어날지는 사실상 疑問이며,

넷째 : 石炭價格은 國際市場에서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매장량의 추가발견可能性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中·長期 세계原油市場의 動向은 쉽게 짐작 수 없으나, 당분간 原油價가 現行 水準을 유지하거나 다소 引下될 것이라는 展望에는 대부분 一致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原油市場 動向이 이번에 國內油價를 引下調整하게 된 主要背景인 것이다.

그러나, 實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기름값을 내린 措置에 조그마한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주위에서 이번 引下措置의 경위와 內容에 대하여 약간의 論難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石油行政의 實務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實感하게 되었다. 이번에 내린 平均引下率 2.82%가 엄격한 意味에서는 國際原油價引下에 의한 직접적인 結果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高油價 時代에 대처하기 위하여 實施해 온 安定基金制度 개선과 精油會社의 精製費引下에 의한 要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른 商品의 去來와는 달리 外上代金(유전스)에 의한 決裁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原油에 있어서 換率上昇은 國際原油價 引上에 못지않게 國內油價引上의 큰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번 油價引下만 하더라도 國際原油價 引下에 따른 직접적인 要因은 0.3%밖에 되지 않으나, 換率は 작년 11月 油價調整때보다 2.8%나 올랐다.

따라서 從來와 같은 油價制度 아래서는 오히려 引上要因을 안고 있는 實情이 있다. 그러나 비싼 原油를 導入하는 精油會社에 差額을 補填해 줌으로써 國內石油需給의 安全瓣 역할을 해 온 安定基金制度가 最近의 國際原油價 引下 환경속에서는 적절치 못하여 原油價 平準化制度를 廢止함으로써 引下要因을 마련케 된 것이다.

이 機會에 기름값 調整을 포함하여 평소 실무자로서 느끼는 몇 가지 所感을 적어본다.

첫째는 에너지當局이 油價調整을 國民의 便에서

보다는 精油會社의 利益에만 급급하여 주먹구구식으로 해오지 않았나하는 國民의 뿌리깊은 不信任이 주는 고통이다.

우리 나라가 消費하는 石油製品量을 年間 2億 배럴로 잡으면 배럴당 기름값을 1百원 내릴때 國民負擔은 2百億원이 줄어든다. 反面 精油會社로서는 2百億원의 損害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같이 단 몇원의 價格變動도 그 미치는 영향이 深大함을 생각할 때, 實務자들이 價格算定의 基礎가 되는 精油社原價檢證의 正確을 기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努力을 하고있는 事實을 알고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둘째는 다른 工產品의 價格決定과는 달리 石油製品의 경우는 原價構成의 硬直性이 強하여 價格調整要因이 되는 變數가 극히 限定되어 있다는 실정이다.

國內油價의 原價構成은 消費者價格 基準으로 볼 때, 產油國의 原油代金部門이 74%, 政府에서 公課金條로 徵收하는 部門(特別消費稅, 關稅, 防衛稅附價稅, 法人稅, 貿易特計資金, 備蓄基金) 등이 20%, 石油流通過程(代理店, 充填所, 注油所, 副販店等)의 마진이 2.5%, 그리고 精油會社의 精製費部門이 約 3.5%로서 쉽게 손 댈수 있는 要因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세째는 최근 現物市場의 原油價引下라는 短期的인 현상을 보고 現物市場으로 부터의 低廉한 原油導入을 과감히 늘려서 國際收支負擔을 낮추어야 한다는 일부의 見解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短期的인 現象을 變數로 하여 政策을 결정하다 보면 워낙 複合的인 要因이 작용하는 國際石油市場에서 危機가 발생할 경우 對處할 장치가 전혀 없게 된다. 잘못하면 國民經濟는 一時에 파국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78年末 이란事態에 따른 第2次 석유과동結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일이다. 79年末부터 80년에 이르는 物量不足과동당시에는 價格은 고사하고 살 物量이 없어 石油製品需給에 一大危機를 맞을뻔 했던 것이다. 돌이켜 볼 때, 이러한 要因들에 대한 弘報가 사실상 未弱했던 점을 否認할 수는 없다. 石油란 國民經濟의 혈액과 같은 것이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러한 問題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야 할 것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